

#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122
------------	--------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상위 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  
제로화 추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물품 제작·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  
품 제로화 및 구민 재활용 의식 함양을 고취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2조제1항)
- 나. 조례에서 정하는 구민의 대상 한정(안 제5조제1항)
- 다.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배포 근거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안 제11조)

##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8. 9. ~ 8. 29.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 제4조제2항”을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냄비 받침, 칫솔, 부채, 자,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규칙제정)**”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p> <p>② (생 약)</p> <p>제3조(기본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p> <p>-----</p> <p>----- 한다)-----</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계획) ①구청장은 -----</p> <p>-----</p> <p>-----</p> <p>-----</p> <p>-----</p> <p>-----</p> <p>-----.</p> <p>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p> <p>-----</p> <p>-----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p> <p>-----</p>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규칙제정) (생략)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냄비받침, 칫솔, 부채, 자,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삭제>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신설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배포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황인화 (☎ 3153-9215)